

第119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3月29日(金) 10時05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2002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2. 財務局 主要懸案 業務報告
3. 都市管理局 主要懸案 業務報告

審査된案件

1. 2002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財務局 主要懸案 業務報告 6面
3. 都市管理局 主要懸案 業務報告財務局 主要懸案 業務報告 16面

(10時05分 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겨울도 어느덧 지나고 이제 햇살이 제법 따뜻하게 느껴지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해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康亨宇 建設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3월 4일에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가화재사건과 지난 3월 20일 인천 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대형참사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가 가장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가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사전에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사설담장이나 축대 등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만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다들 안전과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통하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슬기로운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3월 2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景良 議事擔當主任!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개 국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토론하고자 합니다.

1.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07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안녕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구민의 주차난 해소 등 교통관련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는 다른 구와 달리 시급히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진입로가 협소하거나 소유자의 매도희망가와 감정평가액과의 격차로 협의 취득이 쉽지 않았으며 또한 매도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토지형상의 불균형, 주변 주차수요가 적은 지역의 부지가 매물로 나와 사실상 필요한 지역의 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에 상정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

획변경계획(안)은 충신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신동 65 외 3필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충신동 지역주민 140명이 공동주차장설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01년 10월 충신동 65 외 3필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매도 의향서를 받아 2001년 11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02년 3월 투자심사결과 적정한 추진사업으로 결정되어 이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구두보고 대신에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마는 다행히 종로5·6가 충신동에 이러한 자리가 있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기회를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각 동별로 좀 손쉽게 더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여기에 주차를 몇 대 정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답변하세요.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吳錦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3층 4단 규모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72대를 설치하는 걸로 가설계가 나왔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그 주차장을 우리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한 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많이 댈 수 있는 대수는 남아도는 지역이나 그렇지 않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반경 100m정도를 주차수요 검토를 해보니까 약 10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거기는 특성상 화물 저기도 많고 주차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상업지역이 많잖아요? 상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전일제주차로 거주자로 할 겁니까? 아니면 야간만 주민들한테 제공하실 겁니까? 계획이.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건설을 하고 예비설계로 지금 70여 대 이러한 형태가 나왔는데 설계가 되고 정확한 면수가 나오겠습니까마

는 주변 100m 내지 150m의 수요공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준공이 돼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할 때 전일제로 할 거냐, 야간만 할 거냐, 주간제로 할 거냐 그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우리 종로관내에 방금 吳錦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종로5·6가 충신동에 이러한 주차부지를 매입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지주로부터 매도의사를 승낙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필지에 대해서 총 22억 5,193만 2,000원이 공시지가에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얼마 플러스해서 일반매매 가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매입 진행을 할 때는 감정원 내지 감정사한테 두 개 기관에 보내 가지고 그 가격을 받습니다. 그 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삼아 가지고 평균값을 산정합니다. 그 가격 이상은 주지 못하고 그 밑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희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서도 소유자가 상당히 가격에서 밀고 당기고 상당히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좀더 달라, 우리 공무원의 입장은 어려운 입장인데 해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중간에 소개를 해주시고 중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공무원이 업무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의 뒷받침을 저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다행히 4필지가 있는데 건물이 2개동밖에 없죠? 건물이 약 300여 평 되네요?

그리고 우리 충신동뿐만 아니라 우리 19개동에 주차난이 상당히 불편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많은 타 지역에도 이러한 주차장 문제를 많이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국장님! 매입 부지를 보니까 그 앞에 건물이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매입하지 그랬어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도면상에 보면 조그맣게 나오니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교통행정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吳弼根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거기도 저희가 사실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吳弼根委員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게 나오겠네요.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까지 지어야 각각정리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협의를 못했습니다.

○吳弼根委員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하실 때 3층 74면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60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蔣昭秀 專門委員이 60여 대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마 예비설계로 기본 개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골조가 들어가게 되면 말이지, 옆에 상황 봐가지고 우리 입장으로도 한 대라도 더 나오도록 설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상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3층으로 해서 주차수요를 많이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리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이 주차장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라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메모를 좀 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전에 필운동 184-2호 보안등 설치문제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서면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떨어져있는 보안등 하나가 정면으로 안되어 있고 약간 틀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으로 돌려놓고 기다려왔다가 보안등을 달겠다고 조명계장하고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해달라는 거니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예산을 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직원이 보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재 그 분 집에 자체 의등이 백열등이 있습니다. 백열등을 자꾸 갈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그 문제 좀 해결해주시고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오늘 회의는 그게 아니고

○吳錦南委員 아니, 기회가 되니까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 계세요. 구유재산관리 계획이니까 일단 그거하고 관련된 질문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玄壽漢委員님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玄壽漢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金福同委員님?

○金福同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말씀하세요.

○吳錦南委員 그것 하나 해주시고 필운동 132-12번지 그 옆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피서 주차장으로 한 2대 내지 3대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를 132-12호 주소를 찾아 가지고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는 내자동 쪽에 보면 필운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당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상당히 간판문제 여러 가지 시설문제에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당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표지판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만약에 미관상 보기가 안좋다면 색칠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국장님이 살펴보고 가지고 세종로성당이 인원이 많은, 역사가 오래된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민원이 자주 들어 오니까 메모를 좀 해주셨다가 차후에 연락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원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유재산관리 매입에 대해서 자료를 갑자기 내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토지의 매입의사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안되어 있다는 게 저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진이나 도면이나 관련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적어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충분히 갖춰주세요. 조금 전에 吳弼根幹事께서 高成九課長께 나머지 꺾어진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의사에 대해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주차장을 만들고 돈이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동일한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매입을 추진해서 추가로 매입해서 기왕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반듯

하게 만들어서 한번 주차장 설치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가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러한 것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현재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꺾어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전에 검토돼서 논의가 되었다면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앞으로 사진이든지 현장 도면이든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약한 30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유재산 변경인데 사진 한 장 붙이고 도면 한 장 붙이는 것은 국장님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이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지 못하는 대신 도면이나 사진을 보고 충분히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건설교통국에서는 설계를 하고 건설만 하고 나중에 활용방안에서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생산적인 수익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해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 많이 받아봐야 4만원, 또 주민들한테 다 해주고 나면 여기가 상가지역이 되어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복잡한테 차 몇 대가 한 군데도 없고 차 세워놓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없는 데가 이곳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생산적이고 장기간 이용이 수익이 날 수 있는, 30억을 물어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 그러한 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자료를 급히 준비과정에서 세부적인 설명은 못하시는데 앞으로 어느 동에서 부지 매입을 할는지 모르지만 아마 충분히 생산적인 면 혹은 수익이 얼마만큼 투자해 가지고 1년간에 얼마씩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이 계산이 되어 가지고 자료 설명해주셔야 우리 그 전에는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질의·토론을 했거든요. 오늘은 전부터 위원님들이 이곳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안가결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아까 자료설명에서도 50m, 100m 반경 이내에 차를 댈 수가 없는 몇 대가 안되면 부지매입은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기 사는 거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차량만 파악이 되는 거지 이러한 상가지역은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으니 상인들이 타고오는 차들은 파악이 안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각 동에서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부지매입이 있을 때 조사하는 방법도 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부암동도 몇군데 있었는데 반경100m, 200m 하니까 상가 점포 주인들이 외부사람들이 와서 장사하잖아요? 차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세워놓는단 말이야.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요.

○玄壽漢委員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康局長께서는 玄壽漢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셔서 반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1分 會議中止)

(10時39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2年度 財務局 主要懸案業務報告의 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재무국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진을 상정합니다. 李炳滿 財務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李炳滿입니다. 2002년 3월 1일 財務局長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종로구의회 제11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과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종로구의 건전한 재정과 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委員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재무국 소속 간부들의 인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秀完 財務課長입니다.

다음은 趙朝翼 稅務1課長입니다.

다음은 徐明一 稅務2課長입니다.

다음은 徐燦奎 地籍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현안업무보고 전에 신임 재무국장으로서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財務局長으로 발령받은 후 현안사항과 일상업무 파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면서도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공사 및 물품구입 등의 계약 총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민을 위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 결정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

한 업무를 총괄 추진해야 하는 재무국장으로서 매우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저를 포함한 118명의 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국·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전자 공개 수의계약 및 전자입찰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일세입자금 및 지출금액의 비교분석과 자금운영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의 안전성과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구의 재정기반이 되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제고를 위하여 차질없는 과세는 물론 법인세무서사 등을 통한 신규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 및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각종 지적공부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구민생활 안정 및 민원의 편의제공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2年度 主要業務計劃

(財務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李炳滿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炳滿 財務局長께서 生活福祉局長을 하시다가 재무국으로 오시게 된 것을 재무건

설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인 제가 환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의 관리라든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 개선을 통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는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趙秀完課長을 비롯해서 趙朝翼課長, 徐明一課長, 徐燦奎課長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종로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재무국 소속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炳滿局長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 국·공유재산이 현재 필지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찾지 못하는 국·공유지나 시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대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외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필지를 확인은 했으나 실제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평인지 점유형태 같은 것을 순차적으로 조사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유지는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고 국유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종로5~6가까지 지금 조사가 끝났고 나머지는 금년에 조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국유지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구유지를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세우

고 있습니다. 저도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재산을 현재시점에서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측량해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유지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구유지도 행자부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내년쯤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게되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전부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시에서 국고의 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종로를 전체적으로 측량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財務課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저희가 위탁관리함으로써 인해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의 일부는 구비로 귀속이 되고 국가나 시로 자금 일부가 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각실적에 따라서 저희 구에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이 매년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측량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보조금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그러한 저희 재무과의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사실 국·공유지나 구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국장이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산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관련된 자료 5쪽 그 관리계획을 보면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재산의 용도폐지라든가 기왕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수익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 처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불 때 위원님들

께서는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대단히 많은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이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무국 업무보고에 이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현안만 보고토록 한 것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과 관련지어서 상당히 중요한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으로 하여금 이 사안을 보고토록 하였으니 여러분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자료에 보면 국유재산 16건에 498.3㎡고 구유재산 18건에 403.8㎡인데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그 34건 942㎡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용도폐지된 재산은 기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고 용도폐지해서 매수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4건은 거의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매각을 다 해야겠네요?

○財務局長 李炳滿 점유자한테 거의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용도폐지가 들어갑니다.

○丁炳煥委員 큰 평수는 점유를 안하는 것으로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점유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저희가 점유상태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100% 거의 점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매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도폐지를 한 겁니다.

○丁炳煥委員 국·공유지는 점유자한테 우선권이 있죠?

○財務局長 李炳滿 물론 그렇죠.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자료에 나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로5~6가동을 보더라도 구유지 등 여러 가지 1평, 2평을 깔고 있는 집 주위를 조사해본 결과 약 15% 이상 다 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평내지 반평 이렇게 깔고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분들한테 특혜를 줘서 이분들에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매년 부과를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일제히 전부 조사를 해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리이러해서 귀하의 땅이 몇평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실 의향이 없습니까 해서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종로구에서 그런 일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재무국에 온지 한달 정도 됐는데 그 동안 느낀 것이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필요 없는 재산, 물론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안되겠지만 저희가 필요치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매년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 같은 것을 내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대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께서 그 일을 찾아서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하는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늘진 곳을 찾아서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무척 좋아하실 것이고 종로구에도 아주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엄연히 도로상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때 여기는 도로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거기 도로가 트일줄 알고 건물에 문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연히 도로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 아랫집에서 그걸 막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쓰고 그래요. 이런 것을 종로구청에서는 그 사람

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재무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건히는 모든 건 재무국 소관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구체적으로 번지를 지적해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과장이나 담당 직원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이렇게 불편하게 일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이렇게 불편해서는 안돼요. 건축은 건축을 낼 때 이쪽은 도로니까 문을 내도 된다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 도로를 막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집은 우리가 여러가지 세금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구체적인 것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런 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당연히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종로구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사실 도로만은 받지 않고 그 주위 1m라도 길을 터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局長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서과장께서는 철저히 해서 어느 곳이 도로에 접했는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못받게 하고 그 주위를 편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이 하천부지 이건 절대 불하가 안되지요?

○**財務局長 李炳滿** 하천부지도 용도폐지 되는 하천부지는 불하가 가능하지만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곳은 불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천부지로 써 기능이 없을 때는 불하가 가능하지요.

○**玄壽漢委員** 이게 하천인데 여기 옛날에 몇십년 전에 소로가 나있고 그 옆에 집들을 짓고 사는 데 이게 하천부지니까 불하도 안되고 그 사람들

점용료도 안내고 그러니까 건축도 못하고. 하꼬 방 같은 거 그대로 쓰게 되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현재는 하천기능이 상실된 땅인데 하천이 있어 축대를 쌓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과연 그 땅이 하천부지로서 더이상 필요 없다고 확인만 되면 용도폐지를 그쪽에서 신청하면 불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천관리 부서에서 그 땅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봐줘야 된다고 하면 불하는 힘들지요. 그래서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건 판단을 해야할 겁니다.

○**玄壽漢委員** 옛날에는 도로변에 조금 점유한 것은 불하해 주겠다고 사용료를 내라고 했었는데 그 도로로 저거 앉는 건 불하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한두 집도 아니고 집단불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방법이 안 떠올라요. 하천은 시 소관이잖아요?

○**財務課長 趙秀完** 어느 하천입니까?

○**玄壽漢委員** 흥제천이에요. 흥제천 하천부지는 전부 불하가 안된다는 걸로 아니까 사용료도 안내고 집들은 있고. 작년인가 안전진단있죠? 집들이 몇십 년 됐으니까 안전진단을 하라고 구청에서 통보가 나가니까 요새 막 그걸 쓰더라고.

○**財務局長 李炳滿** 하천관리 부서에서 그건 하천부지는 더이상 사용가치가 없다든지, 활용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만 용도폐지가 됩니다.

○**玄壽漢委員**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건 시에다 합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거기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토목과에서는 시하고 조정을 해서 하겠지요. 거기서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직접 용도폐지는 곤란하거든요.

○**玄壽漢委員** 종로5·6가 지적도를 조사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서부지역쪽은 금년 말이나 가야 다 시 측량하고 그러겠네요?

○**財務局長 李炳滿** 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종로구 구유재산 중 용도가 사실 필요없이 종로구민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덕궁 담장 옆에 있는 재동 파출소는 과거에 그 부지가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지요? 건물은 경찰서 소유로 되어 있고 대지가 종로구 자산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경찰청에서 파출소 용도로 쓰던 걸 파출소를 폐쇄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파출소 용도가 기능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지는 종로구청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종로구청의 당연한 일 아닙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李炯述委員님께서 활용하고자 여러번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찰청에 수차례 너네들 파출소로 쓰는 것을 끝내라고,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시에서 말뿐이 아니고 공문으로도 건의한 바 있고 경찰청에서 그것을 건물을 인계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다른 시설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인계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원래 거기 재동파출소 저거는 파출소 쓰기 위해서 건물 만들었던 거죠?

○**財務課長 趙秀完** 예.

○**李炯述委員** 파출소가 없으면 당연히 용도를 종로구청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건물은 그런데 경찰청 건물이라는

○**李炯述委員** 아무튼 끝까지 땅 소유는 종로구청인데 경찰청에서는 쓰겠다고 하면 계속 방치해둘 겁니까? 종로구청에서 이 부분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종로구청이 대지를 종로구청이 임의대로

용도에 필요하도록 쓸 수 있는 길을 택할 의향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경찰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다는 것이 종로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종로구청 재산 자체를 소극적으로 방치해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 되기 이전에 경찰청하고 행정관서하고 혼용이 됐을 그 당시에 그냥 거기에다 보통 보면 파출소라든지 시유재산에다 동사무소라든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축조된 것으로 아는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종로구청은 다른 지역하고 틀린 점이 600년의 산 역사의 문화산실입니다. 특히 비원같은 경우는 외국관광객이 수없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모습을 보고 가는데 가장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초입구 종로구청 소유 대지 위에 독거노인 해가지고 꼭대기에 빨래도 널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민이 봐도 저거 저렇게 해야 되겠느냐, 빨래도 갖다 널고 뭐 회한한 것을 다 널고 해서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다 보여주지 못하는 데 그런 빨래도 널고 속옷도 널고 해서 외국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종로구청이 잘하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비단 재동파출소 뿐만 아니라 종로관내에 유사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나, 땅주인이 얼마나 시원치 않으면 재산 용도가 기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좀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외국사람들에게 좀 보이기 힘든 저거를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을 방치해두고 과연 종로가 문화일번지, 정치일번지 말은 잘하는데 아름다운 종로를 보여준다는 것이 말하고 실지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외국손님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초입구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종로구청 행정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동파출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와 같은 종로구 소유재산의 기능이 이미 다 끝나고 종로구청에서는 위에 다른 가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건물이 들어선 것을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종로구청에서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특히 재동파출소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담장 옆에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재무과에다 종전에 몇 번 얘기했던 게 초입구에 종로구민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사박물관같은 것을 해가지고 외국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보겠다, 본인에게는 재산상의 피해가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종로구청에서 협조를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름다운 종로가꾸기, 돌아오는 종로” 이러한 얘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종로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앞에 플래카드를 내놓는 것보다도 실지 그런 면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원 담장 옆에 있는 것은 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자산을 종로구청이 좋은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차후에 서면이라도 통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취득대상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노후건물도 제값을 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이나 시민들이 건물을 사고 팔 때는 몇 년 지나면 건물값을 안 쳐준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감정평가사무소에 두 군데에 감정의의를 합니다.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감정가격으로 잡고 있거든요. 감정평가상에 몇 년 지난 건물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이라도 거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산정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

○財務課長 趙秀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우리 혜화초등학교가 이전해서 왔습니다. 거기 도로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학교가 9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쓸데 없는 건물은 그냥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못 쓰고 있는 건물도 도로를 내다보니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으로라도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 50년이나 3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평가가 나지 않게 우리 구에서 조례라도 만들 수 없을까요?

○財務課長 趙秀完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吳弼根委員 연구를 해보세요.

○財務課長 趙秀完 예.

○吳弼根委員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李炳滿局長님께서 비전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저희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아스콘을 씌우다 보니까 50년 이상 소유주가 불분명한 도로가 있는데 과감히 어떻게 변경할 수 없습니까? 관리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로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地籍課長 徐燦奎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자를 찾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적자료를 충분히 줘서 소유자를 찾아서 국공유화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吳弼根委員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50년이

지난 도로가 무주부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망해 가지고 없는데도 땅 소유주가 있다 해가지고 아스콘을 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무주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유지재산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서

○吳弼根委員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말씀 잘 하셨네요. 공고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아스콘을 깔면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

○地籍課長 徐燦奎 연구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우리 徐課長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항목이 다르죠? 사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고 그렇지요? 사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후퇴선으로 자기땅을 내놨단 말입니다. 4, 5평 내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던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사유재산을 도로로 내놨으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 명의를 따져서 자기네들이 도로값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지금 그것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퇴를 시키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놨는데 그것은 법의 한계 때문에 도로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경우가 되었으면

○金福同委員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내모반듯한 땅에다가 도로후퇴선으로 쪽 잘

라서 4평이나 5평 냈다 이 말입니다. 도로가 6m 도로가 안되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사용하고 있다면 진짜 사용하는 것은 6m도로는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유재산을 찾아서 쓰는 것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사실상 저희 도시계획법에서 도로로 정해서 확보된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지정해서 4m도로가 안되면 양쪽으로 떼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개인으로 주고 또 사용은 도로로 하도록 현행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누가 언젠가는 이러한 것은 짚어서 자기네 땅이 10년, 20년,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나중에라도 상속자가 누군가를 찾아서 보상이나 포기를 받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람들 찾아서 종로구청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아무튼 저희 부서가 주관부서가 될 수는 없지만 관련부서에다 건의해서

○金福同委員 徐課長님! 다른 데는 측량 잘해서 구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잘 찾는데 남의 땅은 왜 찾아내지 못하는지

○地籍課長 徐燦奎 관련 주관부서에 건의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문제가 종로구에 상당수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꼭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吳弼根委員님, 특히 건축법상 후퇴한 도로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金福同委員님의 질의는 상당히 좋은 질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그것과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燦奎課長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재무과장께서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로 나간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도로를 재포장하는 경우에 소위 사용료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전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玄壽漢委員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거나 지금 金福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이러한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포장을 안합니다. 구에서 사유토지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옛날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토지의 소유권을 자치구면 자치구, 시면 시로 편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부채납이 없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가 가지고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이 됐든 하수구의 굴착이 됐든 이런 면에서는 불편함이 없는데 토지 소유주가 개인으로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가 공적 목적으로 제공됐다 하더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포장을 못해요. 그것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좋은 수가 없습니까? 사실 이것은 웃으면서 질문을 드리지만 우리가 구가 또는 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소유재산에 대한 신념이 강해지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金福同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자기 토지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가없이 내놓기는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 좋은 수가 없을까요?

○財務局長 李炳滿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서울시

나 저희 구에서도 도로가 강남처럼 완전히 정비되어 있다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좁은 땅에다 좁은 도로에다 건축을 하다보니까 6m도로가 안되니까 건축선 후퇴해서 2m면 2m를 후퇴해서 6m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나머지 2m가 도로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땅이 많은데 저희가 재정이 풍부하면 당연히 먼저 6m도로를 내줘야 정상이죠.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건축에 필요하다고 해서 후퇴해서 지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장기적으로 서울시 또는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선 후퇴한 땅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시나 건설교통부 쪽으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처리의 신빙성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炯述委員 조금 전 吳弼根委員님, 金福同委員님이 참 실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에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이 장소에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재무국장님 보기에 여기서 하지 말고 건축법이니까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재무국 소관도 되고 지적과 소관도 되고 건축과 소관도 되고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어느 쪽에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종로가 현재 피부에 와닿게 어려운 게 70년, 80년 근 100여 년 전에 집을 지은 집들이 많거든. 그때는 집을 지으면서 도로가 나온 부분을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편입되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별저거 없이 저래 가지고 짓고 살다보니 지금 대충 오래된 집들 찾아보면 전부 일본 이름으로 해서 3대, 4대 내려와 가지고 후손들이 소유자가 밑으로 내려오단 말입니다. 내려오는데 어느 시점에 가지고 재개발이든 뭘 하든 그러면 도로를 한쪽으

로 몰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재개발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몇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도로가 가운데 끼어 가지고 절대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 고통이 온단 말입니다. 민법에 보면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도로가 포기한 도로입니다. 20여 년을 그대로 점유하면 점유자가 소송을 하면 이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되는데 종로구청이 당연히 수십년된 도로를 그걸 도로세를 내라고 부과를 시켰을 것 같으면 도로로 내렸는데 왜 돈을 내냐고 포기를 할 텐데 이 도로의 땅세를 전혀 받지 않거든. 평생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생길 때면 그 도로에 대해 행세를 엄청 한단 말이야. 현시가보다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로가 좋은 동네 만드는데 걸림돌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한쪽에는 건축과다, 지적과다 한쪽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이다 해가지고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종로 전체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 두 동료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을 종로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10년 전에 10집을 한테 묶어 가지고 좋은 필지를 하려고 했더니 사도가 끼어 있는데 찾아보니 80년 전에 일본사람 찾아 가지고 마지막에 내려와 봤더니 후손이 있는데 여기 종로구청에서 부구청장, 청장이 들어 가지고 그 사람 설득을 시키니까 현시가보다 배를 더 달라는 거예요. 실지 그렇게 받았다고 안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로가 좋은 동네 만드는데 걸림돌이 바로 그런 사도가 문제가 됩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아름다운 종로 가꾸는데 걸림돌이 적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어느 분이 같이 관계부서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이 어떤 점인지,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종로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거를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 사들이려고 하면 공시지가의 3분의 1만 주면 사거든. 몇 푼 안드립니다. 어떻게 관계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런 도로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거든. 3분의 1정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면 인접된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어떤 집은 도로후퇴선 해가지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블록을 쌓아요. 차도 못들어고 리어카도 못 다니게. 이거는 행정을 지도하는 면에서는 성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종로구민 전체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종로구청은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차도 다니고 리어카도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내놔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후퇴선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지적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재무국 소관도 됩니다. 그렇죠? 사들이는 부분은 재무국 소관이니까 재무국장이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될 거고 또 건축과에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종로주민에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또 관련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지적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사유지가 도로에서 후퇴선 건축후퇴선으로 했을 때 사유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지 않아요? 그냥 존치되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냥 존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과에서 건축선 지정을 하면 건축선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분할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개정되고 내려오면서 분할하는 규정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지정돼서 후퇴한 부분도 분할해서 지목을 바꿔놓는 이러한 작업도 하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어떤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도 비약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간

의 다툼도 생기고 또 국가와 당사자간의 다툼도 이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법으로 개정해야 될 것은 개정해야 되고 또 우리 각 담당부서끼리 긴밀히 협의해서 국유화하는 작업도 조치를 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개인간의 다툼이 생겨서 사유도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그것을 각 부서별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지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건축선을 후퇴해서 건축선이 개인의 토지인 경우에 지적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지적상에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地籍課長 徐燦奎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것이 대책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地籍課長 徐燦奎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거를 분할 안하고 후퇴만 해서 써라 이렇게 법 개정이 돼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도로를 낼 때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우선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도 내놓고 기반시설도 내놓고 사용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내가 대지를 건축을 해서 사용하려면 그에 마땅한 도로를 확보해놓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소유자가 더 많이 후퇴해서 한 경우도 있고 후퇴는 한다고 하는척 해놓고 나중에 담장을 축조해서 더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어서 사례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되고 평가되고 또 도로를 확보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安載弘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나는 그러한 문제가 복잡하게 있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는데 대단히 문제입니다. 마땅히 사유재산권이 관계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과에서 도로후퇴선을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불가피하게 자기 담장이 있다 하더라도 담장을 철거하여 새로운 담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그러니까 지적이 분할되거나 전혀 없이 현장 그대로 놔두고 선 후퇴해서 쓰더라도 저희가 매수를 한다든지 또 도로계획선만 그어 가지고 그것을 분할, 개인들한테 지분을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종전에는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감정했었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재산 침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도 연구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럼 아스콘 포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吳錦南委員 議席에서 - 왜냐 하면 건축전문인한테 물어보면 다들 거고 100평 가량 55%를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것은 내준다. 도로로 편입시켜준다 그러면 건축법상으로 보면, 기본건축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는 100평에 지었는데 도로로 10평을 잘라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하는 분들도 건축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그러한 얘기만 일단 논의가 되고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과 상의가 돼야 할 거 같아요.)

준공 후에 잘라주는 조건으로 해야지요?

(○吳錦南委員 議席에서 - 그런 것은 전문가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밀 바뀌야 그런 혼란이 안오느냐 이거죠. 건축법을 바뀌어야 됩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동안 집행되어 왔던 문제점들도 짚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있고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관한 사항도 경과규정을 조사해서 이루어지도록 조사가 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委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李炳滿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1分 會議中止)

(11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2年度 都市管理局 所管 主要懸案業務報告의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黃義振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자리를 옮긴 黃義振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安載弘 委員長님,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區議會 事務局長으로 재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은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의

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미흡하여 불편을 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2002年度 主要業務計劃

(都市管理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都市管理局長으로 오셔서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종전 都市管理局長님들께서 하신 것 보다 훨씬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黃局長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도시관리국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우리 黃義振局長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都市管理局長으로 가셔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악

동 47번지 주택재개발 민원이 있었지요? 그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약 6,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점이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이 2002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정하는데 '98년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는데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확장하는 연도가 돼서 금년부터 이걸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됩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지역이 지난번에 상세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지금 상세지역이 해제되고 지금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가 그것이 반환된 걸로 아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都市計劃課長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작년 봄에 저희가 서울시에 올렸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층수가 4층이하로 이렇게 제약을 받고 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푸는 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잠언의견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시 전체의 미관지구를 재검토했는데 그 결과 이걸 일반미관지구로 하는 건 안되는 걸로 통보가 온 이런 상태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이 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편입됐는데 그것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안됐다 할 경우에는 이것이 기본계획에 수립될까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아있는 부분은 전면의 주로변 12m이고 뒷편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만으로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이 지역의 노후 정도, 그 다음 재개발의 필요성, 주민들이 희망하는 이런 걸 총

괄적으로 올리면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역사문화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받는 층수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올리면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저축된 가옥들이 76세대가 있는데 그것이 선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돼야 도시계획이 입안될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재개발구역으로 입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丁炳煥委員** 그렇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조금 층수라든가 이런 데 제한은 받지만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일부 저축이 된다고 그래서 전체가 구역지정이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이 선 해제가 되든지 어떤 방침이 있어야 한 두 집이라도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는 몇 집이 걸려있는데 선 해제가 풀리지 않고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립될까 의심되지 않겠어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런데 그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게 일단 불가한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丁炳煥委員** 이게 2003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포함되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상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서울시에서 포함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만약에 포함이 안된다면 사실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합동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공공시설을 저희 구에서

정비를 해주면서 개별 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구역지정이 안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丁炳煥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03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예, 노력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우리 黃局長님! 조금 전에 丁炳煥同僚委員님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예를 들어서 50평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도로가 약 2m, 3m가 되니까 양쪽에서 집에서 건축 후퇴선으로 몇 %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유재산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가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허가 시에 내놓은 도로는 보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도시계획사업으로

○**建築課長 李漢求** 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도로를 2, 3m 정도의 도로를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허가 시에 부득이 해서 내놓은 것은 그냥 도로로 확보해놓은 상태로 그것은 보상이 안되고 거기에 만약에 도로로 다시 넓히겠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넓히겠다고 하면 보상이 됩니다.

○**金福同委員** 그때 도시계획사업으로 넓히겠다고 하면 그것은 나가군요?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같이 해서 나가야 되겠네요? 그 전에는 그것

이 나갈 수 없네요?

○**建築課長 李漢求** 예.

○**金福同委員**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충신동,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우리 동네만 묻겠습니다. 충신동 재개발이 지금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진행이 지금 지난번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2차 설명회를 가진 그 내용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납품을 받으면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립되었으니까 지금부터 구역지정을 하는 절차를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金福同委員** 현재 동의율이 몇 % 들어왔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동의율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동의서를 받은 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것을 모아서 정식으로 3분의 2 요구를 받아서 저희한테 구역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곳의 용적률은 몇 %까지 가능합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용적률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개발 기본계획상에는 180% 내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외'라는 것은 그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 위를 상회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융통성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확정이 됩니다.

○**金福同委員** 이 문제가 종로구의 문제도 되거나와 저희 지역의 문제도 되니까 李 課長께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玄壽漢委員님! 그쪽 부암동의 그린벨트나

취락지구가 있는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우리 安載弘 委員長이 우리 위원들 질문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종로구에서 본 위원이 지금 10여 년 동안 항상 느낀 점이 언제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이게 추진이 잘되어 나가는 것 같다가도 보면 담당국장이 바뀌고 과장 바뀌고 그러다 보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나중에 가다보면 유아무야 해가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종로 여러 부분에 고통스러운 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6군데 있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예.

○**李炯述委員** 6군데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진행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99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용역을 맡아서 4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담당부서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이게 진행과정도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기이 어느 부분을 일을 하나 추진해나가면 이것을 되도록이면 서둘러 가지고 서울시에 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참견을 해야만 일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4월 13일 용역이 끝나면 그 뒤의 과정이 어떤 수순이 남아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漣**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 관계는 건설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의 각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시 녹지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제도 제가 시에 가서 이것을 상담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조

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李炯述委員 잠깐만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4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뒤에 일어나는 수순은 어떤 수순이 있느냐는 애깁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듣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李炯述委員 중앙은 뭐고 건설교통부는 뭐예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중앙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중앙이라는 얘기가 건설교통부 애깁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예.

○李炯述委員 그것이 날짜가 위원들 소집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위원들이 연결이 안되고 그러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만약 이것을 그냥 두면 1년 2년도 간다고, 조금 하기가 걸끄러우면 그때 하지 않고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제한지역하고 틀린 점이 수십 년을 주민들이 공원녹지 공간이 아닌 주민이 사는 그런 안에 있는 그런 특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 타지역의 개발제한지역은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가 아니고 녹지공간 이래서 투기성도 내다보이지만 이 종로의 대다수의 것은 현재 수십 년 살고 있는 주민들이 누가 보든 이것은 제한해서는 안될 지역을 해울렸으면 전국 다른 지역하고 같은 수순에 맡겨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 전국적으로 일반 평준화 시켜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대접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종로의 어려움과 종로의 실정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살살이 건의도 드리고 또 그 부분을 고통받는 우리 종로구민에게 알려주면 역시 종로의 공무원들은 과거하고는 틀리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녹지과장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것을 건설교통부로 올려 가지고 교통부에서 하도록 그대로 얘기만 듣고 넘어가면 하시 세월이 될 수도 있다고,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건교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담당국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했더니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출장가고 없다고 하고 몇 개월 후에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관을 만났더니 다음다음 날 3일만에 이뤄지더라고. 지금 현재 이런 종로 6군데 지역은 타지역과 같이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서 추진하면서 이 부분의 진행과정을 우리 종로구민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보시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 관계는 종로만 건교부에서 심의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李炯述委員 綠地課長! 종로의 그린벨트 6개 지역은 타지역하고 분명히 틀리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상황을 건교부에 있는 직원들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위원들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속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 일이 잘될 것도 안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점에 해제를 했을 때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요철이 된다든지 경계 표시 및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얘기인지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뒤에 도면을 보시면

○李炯述委員 도면보다도 설명을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도면을 보시면 도면 안에 굵은 선으로 그어져 있는 라인이 해제가 되는 면입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25-1쪽 도면을 보시면 부암동 지역인데 지금 현재 전체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해제지역이 점선 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 안으로만 해제가 될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그린벨트에 남게 됩니다.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李炯述委員 지금까지의 많은 세월 동안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것을 풀어주겠다고 노력하고 힘들게 추진해온 것은 정말 우리 종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나오면서 종로구청이 여기에서는 서울시하고 건교부에서 하는 그대로 맡겨뒀다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해가지고 뒤쳐질 수도 있어요. 또 그대로 계속 여기에서는 일일이 상세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빠뜨리지 않고 모든 부분을 그린벨트 해제 당위성에 대해서는 올려줬지만 그분들한테 그대로 맡겨놨을 때에 타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랬을 때에 담당국장이 바뀌어지고 과장이 바뀌어지면 다른 분들이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黃 局長님이 조금 전에 위원장 얘기대로 의회사무국장이었을 때는 여기에 이만큼 상세한 부분까지 깊이 얘기해주는데 우리 위원장이 점수 매길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100점을 매겨도 대단할 텐데 200점을 주는데 아마 의회사무국장을 하시다가 고생을 하셨다고 100점을 더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건교부로 올라갔다고 하면 찾아가서 여기 종로구의 그린벨트는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담당부서 책임자하고 깊이 의논도 하고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나중에 결과 통보가 와 가지고 역시 다른 데하고 묶여 가지고 안되었다면 안되는 책임은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음에 다른 분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힘드시더라도 이 그린벨트만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黃 局長 오셨을 때 잘 해결해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부터 먼저 하시죠.

○玄壽漢委員 좌우지간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주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도면이 나와있는데 도면 가만 줄 친 것 그 안만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것은 누가 그랬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부 일차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玄壽漢委員 그래서 이것만 가만 선 안의 것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예,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어디다 썼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1억 3,500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걸로 아는데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억인가 구청장이 배려를 해줘 가지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건교부하고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또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해제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라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이게 되니까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玄壽漢委員 서울시에 1억 3,500만원 확정해놓은 것은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1억 3,500만원은 우리 중

로구 전 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그 용역비입니다. 일반지구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용역비 그 건입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착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구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것이 금년 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끝나면 우리는 7월달부터 그 2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맞습니다. 그 2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1억 3,500은 작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을 용역으로 세분화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2억원은 부암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1억 3,500은 부암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에 한정된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종로구 전체를?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부암동에 1억 3,500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장이 보고를 잘못했지?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2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경에 해제할 걸로 예상을 해서 7월에 부암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이렇게 까만 점선만 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기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용역을 주면 이것이 변경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바운더리 도면상에 표시된 게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을 이 안을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경계에 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2차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건교부로 올라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玄壽漢委員 여기 바운더리 바깥도 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상황이 변동이 있겠네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玄壽漢委員 왜냐하면 여기에서 빠진 데는 뭐라고 나올 거라고, 주민들이 왜 우리는 방치했냐고 그래서 인왕산 1구역에 4만평을 전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취락지구 지정에 27페이지를 보면 평창동 260번지, 구기동 53번지, 부암동 100번지, 홍지동 122번지 아주 적절한데 잘 하시려고 하셨는데 여기에 27페이지에 '취락지구 지정으로 바뀌는 점' 해가지고 건폐율 적용확대 완화 60% 해가지고 또 60% 이것은 뭐예요? 팔호 해서 20%, 40%는 뭐예요?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취락지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은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고 이 취락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린벨트는 그냥 놔두되 그 일정한 지역을 다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것도 변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건폐율이 조금 바뀐다, 60%에서 60% 하라는 게 있고, 또 당초에는 60%에서 20%로 하는 것이 옆에 표시된 것이 40%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일부 40%로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40%로 건폐율이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앞에 60%는 또 뭐예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한 줄에 써놔서 그렇습니다. 그냥 60%로 적용하는 것은 60%로 하고, 당초에 20%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40%로 늘린다 그 관계는 연면적 제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취락지구가 되면 당초에는 60% 짓는 것은 300㎡ 이하로 지을 때는 그것을 적용하고 면적이 클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클 때는 당초에는 면적의 20%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4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면적이 넓은 경우는 연면적 제한범위가 안 걸리는 20% 내지 40%로 적용을 하고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300㎡ 이상을 못 짓기 때문에 60%까지 용적률을 준다 건폐율이 준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 줄에 써놔서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궁금한 것이 평창동 260번지 일대 주택단지 조성이라고 해놓고 그쪽이 몇 십년 째 묶여 있는데 지금 요새 가보면 집들을 크게 잘 짓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구기동 53번지 이건 혹시 청운맨션인가 그 일대 아니에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상명대학교 뒤에 빌라단지가 있습니다. 산 위에, 상명대학교 위에

○玄壽漢委員 아니죠. 상명대학교 위가 아니고 뒤쪽이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여기에서 보면 상명대학교 위에 넘어가서 저쪽으로 보시면 쭉 들어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구기동 상명대학교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골짜기 밑에 일부 국립공원 들어가는 조그마한 지역이 있습니다. 동네하고 같이 포함되는데 거기에만 그린벨트를 하고 국립공원하고 같이 경계선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리고 부암동 100번지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그것은 스카이웨이 올라가는 도로 옆 좌측입니다.

○玄壽漢委員 거기를 전부 빌라로 개발하고 있거

든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거기는 개발제한지역이라 빌라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뒤의 지역입니다.

○玄壽漢委員 홍지동 122번지 일대 거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화재 석과정은 어떻게 제외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여기에도 해야 될 것이고 이곳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거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이곳도 거의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과 비슷하게 추진됩니다. 과정은 같습니다.

○玄壽漢委員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와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玄壽漢委員 취락지구 추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조사지침이 내려오면 조사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서울시 것을 전부 취합해서 타당하다고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요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될는지 안될지도 모르네?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그것도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요, 짧게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하실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吳弼根委員님! 질문하십시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綠地課長님! 저희 관내에 혜화동 5번지 일대 풍치지구 그린벨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여기에서 빠져있네

요? 성곽 밑으로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거기는 공원용지이지 개발제한지역은 아닙니다.

○吳弼根委員 풍치지구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거기는 마로니에공원 내려오는 지역은

○吳弼根委員 경신고등학교 밑으로 이쪽으로 성곽 밑으로 혜화동 5번지 일대가 풍치지구 지역인데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곳은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 해제 또는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 작년도에 종로구 전체를 조사해서 서울시에 올렸었는데 그동안 서울시하고 여러 번 말도 있었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이게 한꺼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거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작년 말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吳弼根委員 혜화동만 반려되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전부 같이 반려되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러면 6군데 전부다 반려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용이고 풍치지구는 여기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군데 전부 같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만든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만 만든 거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별도로

○吳弼根委員 혜화동 5번지 일대에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어떻게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쪽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쪽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내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建築課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명륜1가 5-3 신축건물에 대한 진정이 없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명륜1가요?

○吳弼根委員 5번지 3호

○建築課長 李漢求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吳弼根委員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구민생활관에서 성대로 넘어가는 길 말고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명륜1가 5번지 3호가 한 200평 규모의 대지에다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내줍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建築課長 李漢求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吳弼根委員 지금 4,5층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가 건축허가서 4층 이하 연면적 2,000㎡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조사, 검사한 것을 대행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설계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예. 그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지금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동네 민원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건물을 짓고 있는지나 하면 그 큰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기존도로가 있는데 1m정도로 기존 도로를 침범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청장, 건축과장이

○建築課長 李漢求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관찮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吳弼根委員 실사를 꼭 해서 가지고 건축과장이 과연 이것이 적법하게 건축이 되고 있는가를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국장님께서서는 말이죠. 지금 吳弼根委員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의회 회기중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 요구를 하면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데 黃局長님께서 오늘 吳弼根委員의 질의내용을 체크하셔서 보고

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죄송합니다. 12시47분인데 간략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丁炳煥議員**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李廷花課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코자 서울시도시계획심의회에 올렸는데 그것이 반환되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丁炳煥議員**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지금 그것이 우리 것만 반려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한꺼번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하고 협조를 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丁炳煥議員** 재검토가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높은 건물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다시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 미관지구에 걸려서 개발이 되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議員** 재검토할 수 있도록 언제쯤 올리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상에 그전에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 이것은 4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일반미관지구를 층수제한을 없앴으로 해서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미관지구를 다시 세분화하면서 꼭 역사문화미관지구 아닌 것보다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식으로 조례에 새로운 규정을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丁炳煥議員**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무악동 현황을 보면 0.05km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선바위 상단입니다.

○**丁炳煥議員** 상단 어디쯤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부대 맨 꼭대기로 주거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丁炳煥議員** 여기는 그럼 해제된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겠네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거기는 집이 한채도 없는 곳입니다.

○**丁炳煥議員** 해제되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예, 거기는 무악동에서부터 부암동 입구까지는 거의 중반 이상으로 지나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오히려 공원지역이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丁炳煥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제가 간략하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지정해제지역 지정토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번하고 토지소유주하고 평수하고, 그 다음에 우선취락지구지정 토지의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잠시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지정내역이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지적공부상 정리가 안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종전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후퇴선이 생기는 경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에 문제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도로의 포장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매설 때 사용승낙서를 청구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의 견해는 무엇인지 의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과 하고도 관련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집단민원이 있을 시에는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서 해소하는 것이 주민의 행정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의 각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열심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시도의회 의견청취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2002년 2월부터 하는데 2005년까지 걸릴 것인지 2003년에 끝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기를 예정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지역 제한지역의 취락지구지정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이것을 시정연구개발원에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혹은 우리 구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도 전혀 해당 지역 구의원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정된 후에 해당구역 구의원들한테 통보가 되는데 혹시 보안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청 또는 시정연구개발원에서 단독으로 의사 결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토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의 한유석계장께서 이번에 시험을 보느라 고생하셨고 또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黃義振 都市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황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時54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財務課長 趙秀完
地籍課長 徐燦奎
住宅課長 宣圭景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建築課長 李漢求
公園綠地課長 俞樂潛
交通行政課長 高成九